



www.humanrights.go.kr
차별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20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0. 10. 27.(화) 14:00~15:30

| 장소 | 부산인권교육센터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프로그램

Program

- 일시: 2020. 10. 27.(화) 14:00~15:30
- 장소: 부산인권교육센터

시 간	내 용
14:00~14:05	❖ 인사말
	좌장 :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14:05~14:25 (20분)	[발제 1]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과제 -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14:25~14:45 (20분)	[발제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검토 -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4:45~15:05 (20분)	[발제 3] 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디자인연구실장
15:05~15:30 (25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발제 1]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과제 1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 [발제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검토
 (아동보육시설 거주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아동을 중심으로) 29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발제 3] 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45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디자인연구실장)

- 부 록 61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3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9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 1]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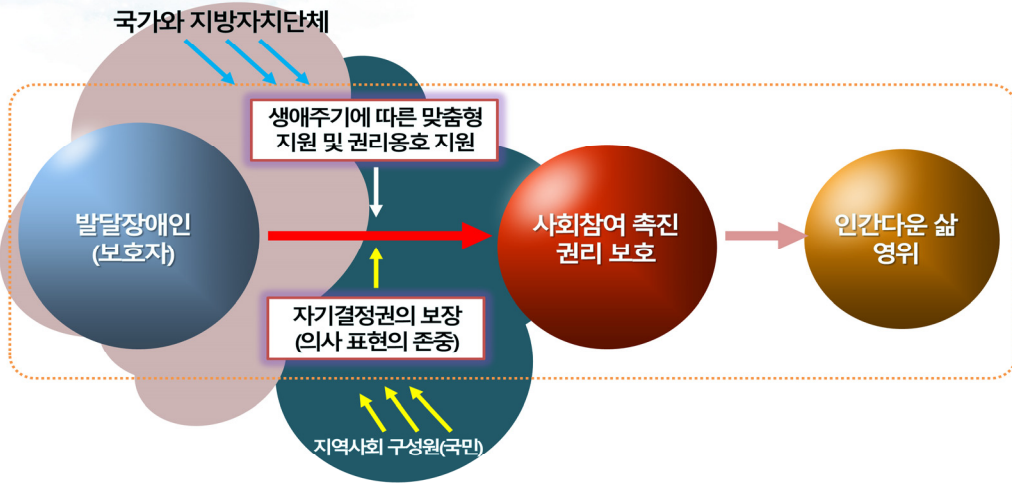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1.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1. 법률의 제정 목적



<그림> 법률의 제정 목적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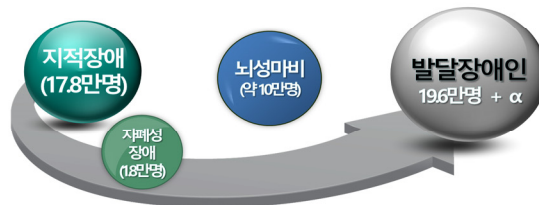
1.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2. 법률의 수혜 대상자

•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이외에 “통상적으로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는 우선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동반하는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히 영유아 시기의) 아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뇌성마비 장애인도 이 법률의 수혜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뇌성마비 장애인 모두가 이 법률의 수혜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1. 발달장애인의 법의 주요 내용

3.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내용

성인기

학령기

영유아

공통 지원

자립생활 중심

-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전문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 거주시설 지원, 주간활동 지원, 돌봄지원, 자조그룹 운영, 계좌관리, 성년후견인 지원 관련(공공후견인 양성) 등

지역사회 활동 중심

- 발달재활서비스, 행동지원, 거점병원 가족지원, 여가/문화/체육/예술 -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지원)
- 돌봄지원(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

발달 지원 중심

- 조기진단 및 조기개입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 정밀진단 비용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행동지원, 거점병원 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거점병원 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 돌봄지원(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욕구 파악 서비스 조정 서비스 연계)
- 정보 및 상담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인권 침해 보호 및 권리 구제 지원(인권 침해 사건 인지 및 신고 접수, 현황 조사, 격리 지원 및 보호 조치 등)
- 가족지원(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심리상담 지원, 휴식 및 일시돌봄 지원, 형제/자매 지원)
- 의사소통 지원(언어기쉬운 형태로 정책 정보 제공, 사법행정의 등의 절차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지원(전문인력) 의사소통 도구 지원)

1. 발달장애인의 법의 주요 내용

4.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

01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기관(시설)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센터 내 운영위원회
-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 중증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 직업재활시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02 새로운 서비스

-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 지원
- 재활치료 서비스를 성인까지 제공
-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 문화, 체육 및 예술 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돌봄 지원 (활동지원과 연계하여 지원)
-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상담지원, 형제/자매 지원

03 차별화된 서비스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설계 및 필요시 서비스 내용 변경 가능)
- 별도의 독립적 전달체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환경 구현(서비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시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지원

기존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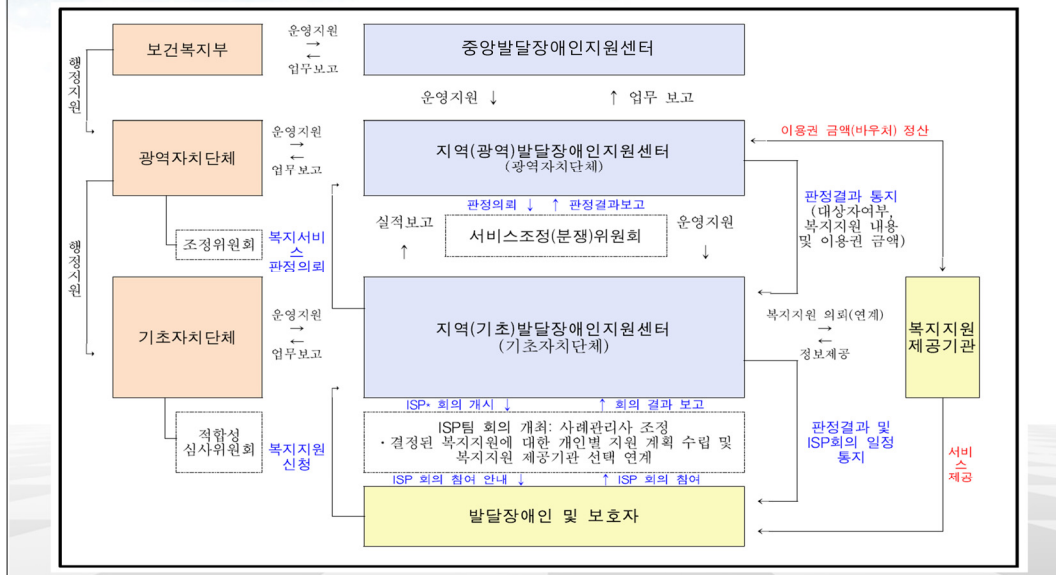
I. 발달장애인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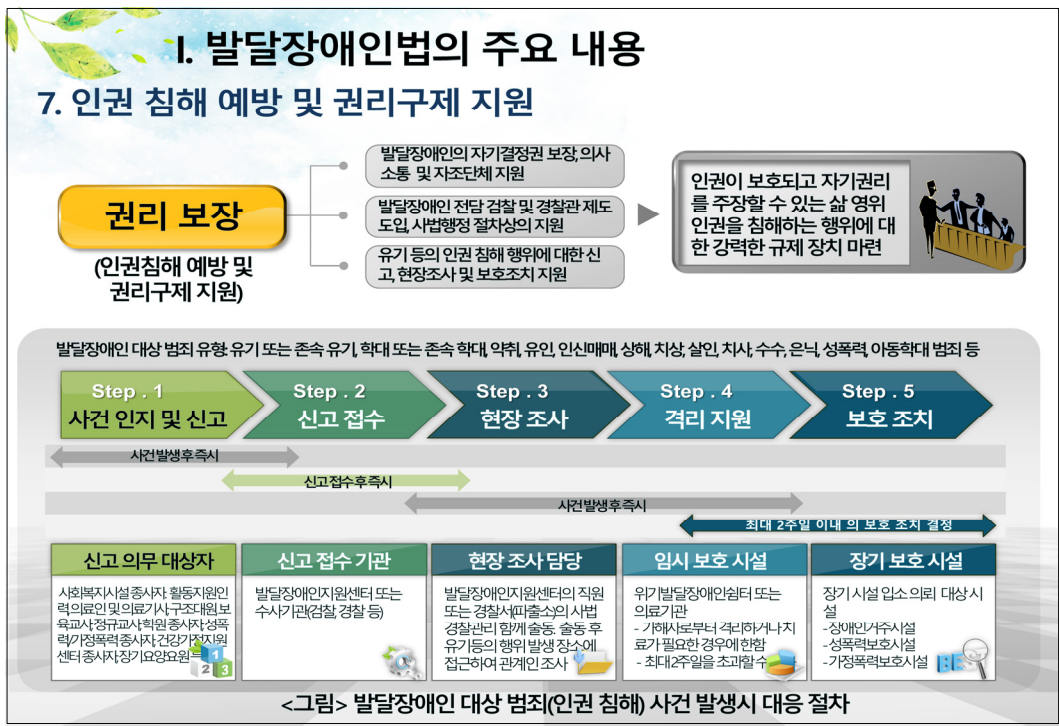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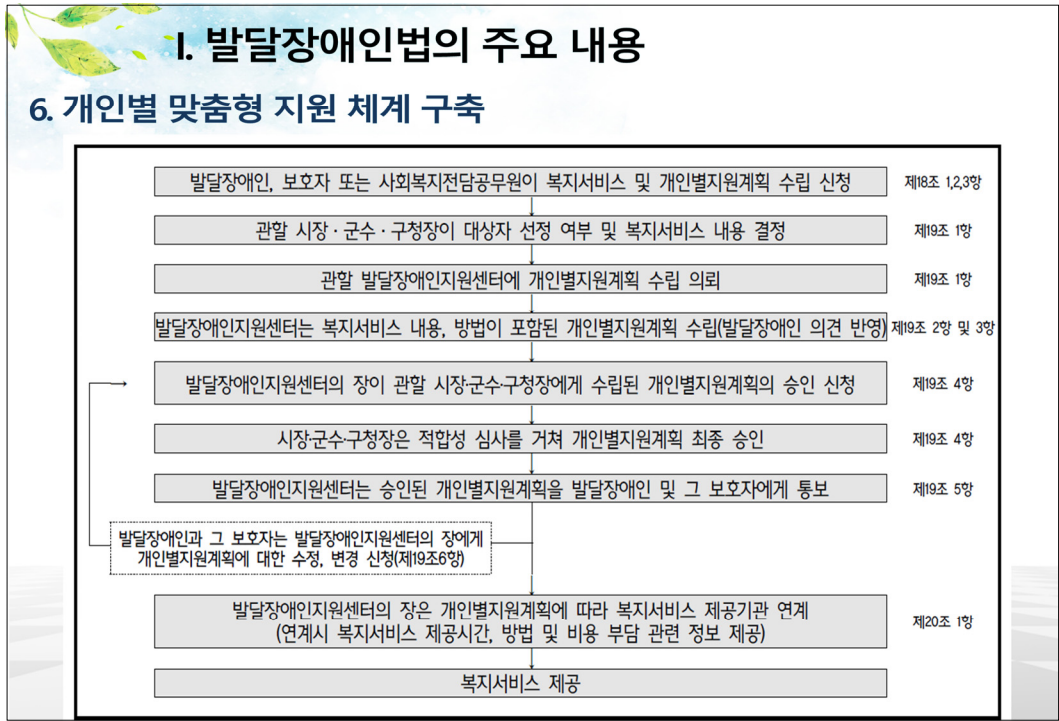
5. 새로운 지원 체계(전달 체계) 구축



I. 발달장애인의 주요 내용

5. 새로운 지원 체계(전달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I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 II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III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IV 제언

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발달장애인법 시행 준비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TFT 구성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첫째,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발달장애인법 시행 준비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TFT 구성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 플랜 (예)

비전

함께 서울: 발달장애인과 함께 서울

목적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환경 구현

목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주요 기반 구축 및 지원 여건 개선

사업
운영
전략

Evidence-based

근거 기반

실행연구, 사례분석, 조사 연구에 근거하여 모델 개발

Need-based

수요 기반

조사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종사자, 전문가의 요구를 수렴하여 모델 개발

Governance-based

협치 기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 협의 및 모델 도출

Visible Process

투명성 제고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진행 방식으로 연구진 운영

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발달장애인법 시행 준비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TFT 구성 및 마스터 플랜 수립

탈시설전환 관련 지역 차원의 마스터플랜 (예시)

기반 구축 과제

법과 제도적
환경 구축

- (서울)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서울)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앙정부 및 서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재편
- (중앙정부)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개인 소득 보장 제도 마련
- (중앙정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개인 욕구에 의한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중기 과제

탈시설 및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
- 탈시설 정착금 확대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 자립생활가정을 모델로 한 새로운 형태의 거주시설 모델
- 시범운영 및 기존 시설의 전환 가능성 검토
- 직업 훈련 및 직업 알선 지원 시설 확충
- 평생교육, 여가 문화, 체육 등의 지원 시설 확충
- 자기관리·옹호 교육 보급, 자조그룹 운영 지원 등

우선 과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전
환 지원 체계
구축

- 개인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 시설 내 개인별 전환 지원팀 운영
- 자치구 내 전환 서비스 담당자 배치
- 기존 서울시 전환 서비스 센터 기능 강화

단기

중장기

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지자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첫째, 발달장애인법 제4조에 따라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
- 둘째, 발달장애인법에서 새롭게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새롭게 실시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셋째, 발달장애인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미비점 보완

* 지자체 자치법규 제정 현황

-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2009년 7월 15일 제정, 광주광역시조례 제3717호)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2010년 12월 31일 제정, 대전광역시조례 제3913호)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2013년 7월 10일 제정, 부산광역시조례 제5081호)
-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 14건

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발달장애인 관련 신규 복지사업 시범 실시

법률 시행에 따라 신규로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등)

-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운영 사업(해외 교류 사업 포함)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조력인 양성·배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자료 제작 지침 개발 및 정책 자료 보급 사업)
-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전담검사, 전담사법경찰관 및 민원 담당 직원 대상)
- 발달장애인 행동 발달 증진 사업(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행동 전문가 양성)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인 교육 사업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여가, 문화, 체육, 예술 활동 시설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부모 동료 상담, 형제·자매 지원, 부모 휴식 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소득보장, 돌봄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표>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서비스) 현황

유형	기관(시설) 명칭	기관(시설) 수	배치 인력 유형	소요 인원
신규 설치 기관 (시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3조 관련, 공공기관)	1개소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2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4조 관련, 공공기관)	100개소 이상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1,000
	행동발달증진센터(제24조 관련)	17개소 이상	특수교사, 행동전문가 등	8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제26조 관련)	50개소 이상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등	500
	중증발달장애인지업훈련시설(제25조 관련)	17개소 이상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170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17조 관련)	17개소 이상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생활교사 등	85
	발달장애인이자, 문화, 체육, 예술 활동 시설(제27조 관련)	100개소 이상	특수교사, 여가문화지도사, 전문 상담사 등	500
	소계			2,360
신규 또는 기존 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운영 기관(제11조 관련)	100개소 이상	조력인 지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200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조력인 양성 및 배치 기관(제10조 관련)	100개소 이상	특수교사, 전문 상담사 등	500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활용 전문인력 배치 기관(제10조 관련)	10개소 이상	특수교사, 재활공학사 등	100
	발달재활사 파견(배치) 기관(제24조 관련)	1000명 이상	치료사, 특수교사 등	1,000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 의료인, 행정기관 인력 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수행 기관(제10조 및 제13조 관련)	100개소 이상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1,000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수행 기관(제30조 관련)	10개소 이상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10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양성 기관(제9조 관련)	5개소 이상	공공후견인: 최소 학력 자격(고교 졸업 이상) 전문후견인: 교사, 변호사 등 자격 소지자	500
	소계			3,500
	계			5,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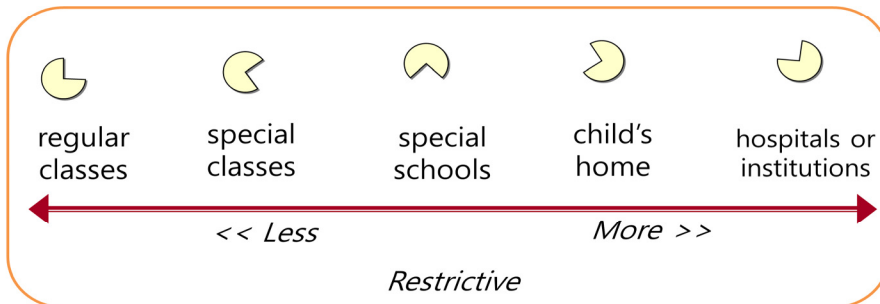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I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 II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III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IV 제언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소 제한 환경 원리에 따른 지원 체계

* 미국 장애인교육향상법(IDEA)에서는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을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최대한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환경이라고 규정
 → 최소 제한 환경 원칙에 따라 장애아동의 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반학교 일반학급 → 일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순회교육(가정) → 병원, 시설 교육으로 정하고 있음



Hevard (2005), LRE Module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소 제한 환경 원리에 따른 지원 체계

* 최소 제한 환경(LRE)원리를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음 : 주거, 고용, 활동(보호) 서비스 적용

		주거 서비스	고용 서비스	일상활동 서비스
제한정도	최소 제한 >>	* 거주장소만 제공(주택임대)	* 일반고용 (완전경쟁 고용)	* 주간활동 : 일반 그룹
		* 거주장소+관리서비스 (건물수선, 공과금 관리 등)만 제공(공동주택)	* 지원 고용 (선배치 후지원)	* 주간활동 : 발달장애인 그룹
		* 거주장소+관리+미약한 개별지원(체험홈)	* 지원 고용 (선훈련 후배치) - 훈련 기간 조정 -	* 주간보호 + 주간활동 - 주간활동 : 여가, 놀이, 문화, 체육, 예술 등
	<< 최대 제한	* 거주장소+관리+식사+미약한 개별지원(그룹홈, 케어홈)	* 직업준비 훈련 - 기존 보호작업장	* 주간보호 (간호와 보호) - 병원, 요양기관
		* 거주장소+관리+식사+개별지원(간호지원(요양홈))		

※ 기존의 보호작업개념을 직업준비훈련으로 전환, 기존의 주간 보호(Care)를 주간 활동(Activity) 개념으로 전환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1. 발달장애인 주거 정책

1) 선배치-후후련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주거 지원 로드맵 구축

- 독립주거와 지원주거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 제안
-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주거 생활 지원의 방향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 → 자립생활 체험홈 → 자립생활주택 → 독립 가정)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설로(독립 주거 → 지원 주거 → 공동 주거 → 보호 주거) 변화되어야 함

<표> 지역사회 주거 지원 모형 분류

수준	주거 유형	지원 강도	주거 형태 (지원 내용)	지원(이용) 대상	필요한 비용
Level 1 (독립 주거)	개인 주택	간헐적 지원	완전 독립 생활 (완전 독립 거주 공간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부 인력 방문 지원)	1. 이미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2. 완전 독립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생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3. 최초로 거주 생활 전환을 신청한 발달장애인	· 주택 임대 비용 · 주택 개조 비용 · 외부 인력 방문 지원 비용
Level 2 (지원 주거)	지원 주택	제한적 지원	지원 독립 생활 (독립 거주 + 근거리 지역에 외부 지원인력 상시 배치 및 지원) * 미국: 지원 생활 주택	1. Level 1에서 3개월 이상 적응을 하지 못한 발달 장애인 2. 근거리 지역에 상시 지원 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중증의 발달 장애인	· 주택 임대 비용 · 주택 개조 비용 · 상시 배치 외부 지원 인력 운영 비용
Level 3 (공동 주거)	공동 주택	확장적 지원	부분 독립 생활 (건물 내 독립된 거주 unit 제공 + 건물 내 다른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지원 인력 배치) 예) 호주: 클러스터 하우스	1. Level 2에서 3개월 이상 적응을 하지 못한 발달 장애인 2. 건물 내부에 즉시 지원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중증의 발달장애인	· 공동 주택 설치 비용 · 건물 내 독립 unit 설치 비용 · 건물 내 지원 인력 운영 비용
Level 4 (보호 주거)	요양 시설	전반적 지원	시설 생활 (건물 내 개인별 unit 제공 + 개인 공간 내에서 요양 보호 staff 상시 지원) 예) 기존의 거주생활시설(단, 개인별 unit 제공 및 상시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1. Level 3에서 3개월 이상 적응을 하지 못한 발달 장애인 2. 24시간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누군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최중증의 발달장애인	· 시설 설치 비용 · 건물 내 개인별 unit 설치 비용 · 건물 내 staff 운영 비용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1. 발달장애인 주거 정책

2) 지원하우스, 클러스터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사업 시범 실시

- 지원(보호)하우스(supported house): 미국의 지원생활주택(supported living house), 호주 또는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e) 등을 참고하여 제안하는 주택 모델로 개인을 위한 독립 주택을 제공하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한된 경우(약을 처방받는 것, 지출하는 것 등)에 한해 주거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택 지원 모델

※ 해외 사례- 영국의 특성화 주택 제도

- 영국의 특성화 주택: 다양한 장애인 이용자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케어(care)와 지원(support)이 결합된 주택. 서포티드 하우스(supported housing), 쉐터드 하우스(sheltered housing), 엑스트라 하우스(extra care housing) 등이 있음.

* 서포티드 하우스(supported housing):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알람시스템이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음.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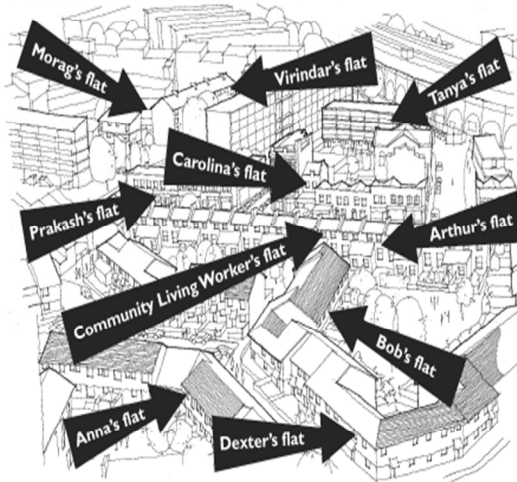
* 쉐터드 하우스(sheltered housing): 독립적인 플랫(flat) 혹은 단층 주택(bungalow). 독립적인 주거 공간은 유지하지만 일부 시설을 공동시설로 사용. 알람 콜 시스템이 있고,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함께 생활함.

* 엑스트라 케어 하우스(extra care housing): 쉐터드 하우스보다 높은 수준의 케어와 서포트를 제공하는 주택. 스스로 생활하기 좀 더 힘든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클러스터하우스: 호주의 클러스터하우스(duster housing)를 참고하여 제안하는 주택 모델로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주택 건설 또 몇 개의 인접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고, 지원요청이 가능한 내부 통신시스템이 구축된 주택 지원 모델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특히 지원 주거,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모델 개발 필요



<그림> 호주 클러스터 하우스 예

이와 같은 하우스는 10개의 집으로 구성하되, 서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10번째 집은 자원활동가 또는 관련 종사자가 거주하는 곳(Community Living Worker's flat)이다.

출처: <http://www.civicsociety.org.au/KeyRing.htm>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지역사회 주거생활의 다양한 옵션 개발 필요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지역사회 주거생활의 다양한 옵션 개발 필요

주거바우처 지원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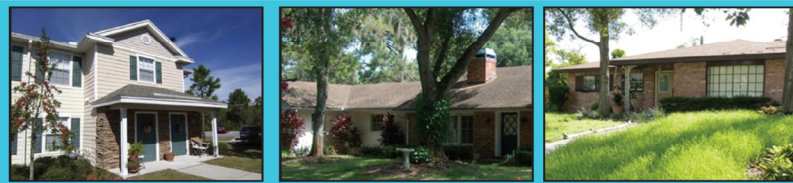
보조금 지원 주택



쉐어하우스(공용주택)



소규모 지원주택



Examples of small sized assisted living facilities in Brandon, Panama City and Tampa, Florida.

27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1. 발달장애인 주거 정책

3)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 수립

-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확대, 공동주택 공급시 공급물량의 5%를 발달장애인 주택으로 할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량 확대 계획 수립 필요
- 둘째, 독립 주거 또는 지원 주거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주거 생활을 하려는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 임차료 지원 방안
- 셋째, 주택도시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 대출 상품 개발 고려

4)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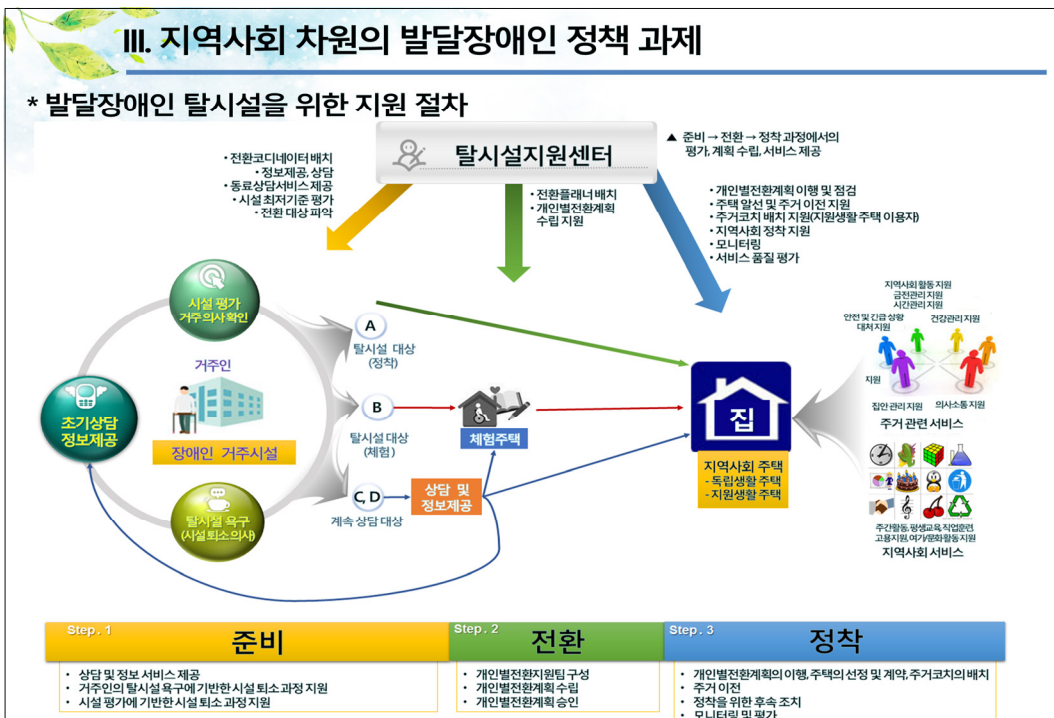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주거 생활 도모를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지원 주거 생활의 경우 다양한 인력이 주거 시설에 투입되고 지원되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서비스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탈시설전환센터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생활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는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주택 및 주거 환경 실태조사,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만 담당. 물리적 지원에만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인력이 돌봄, 교육 등이 함께 지원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1. 발달장애인 주거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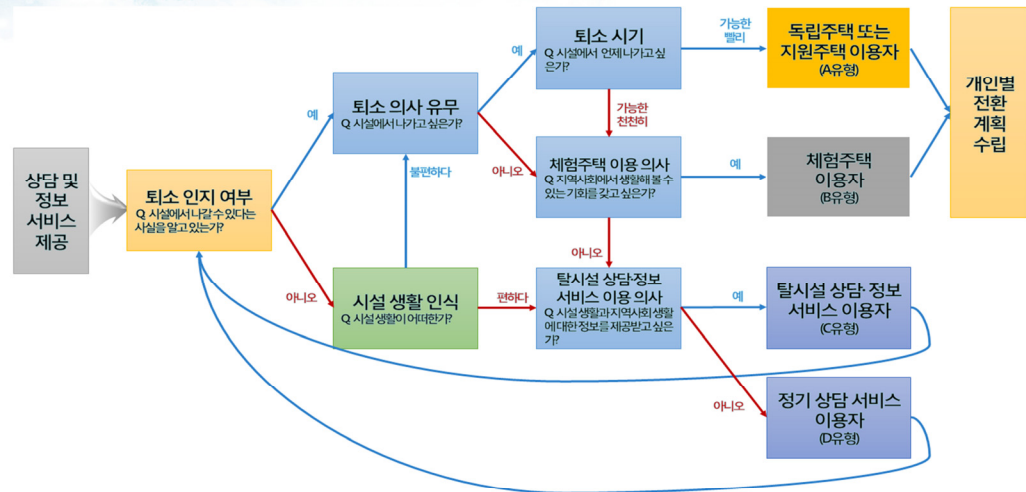
5) 시설 생활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방안 수립

-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별도의 전환 정책도 함께 수립 필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탈시설 장애인을 위하여 정착금 지원, 주거생활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적고 지원 기간도 제한적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이들 발달장애인들에게 주택 우선 지원, 주거급여 제공, 정착금 또는 주거생활비 지원,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주거 복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준비와 지역사회 전환을 위하여 체험홈 또는 자립홈 등을 설치, 운영 필요
- 신규 생활시설 설치 중지 및 불필요한 입소 방지책 마련, 기존 대규모 시설 해체 시범사업 실시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여 보장,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개인 예산 지급 방식으로 변경 등의 시설 유입을 차단하는 전략 수립 필요(박숙경, 2016).
-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의 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해체를 선언하고, 시설 생활 장애인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안을 채택하는 것임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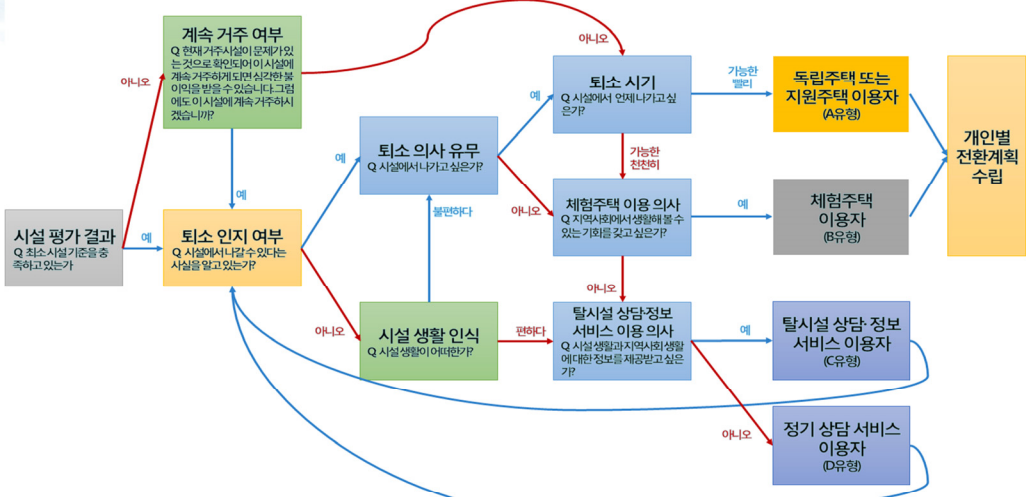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원 절차



[그림] 발달장애인의 퇴소 의사에 기반한 탈시설 준비 과정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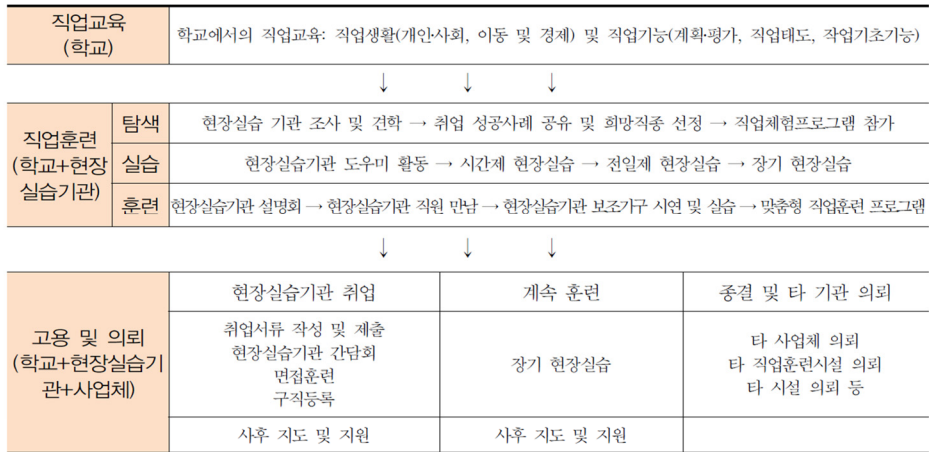


[그림] 시설 평가에 기반한 탈시설 준비 과정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2.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

1) 현장 중심 직업교육 모형 적극 도입 필요



<그림> 현장 중심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모형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2.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

2) 현장 중심 직업 훈련 사업 운영을 위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시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지원(프로젝트 서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00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운영 필요
- 이 센터에서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업체에 파견할 수 있는 직무 지도(보조) 인력을 양성·파견하며, 각 업체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각급학교 및 관련 기관 협조·연계 업무 담당
- '17년도에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고려하여 권역별 또는 시군별 확대 설치
*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이 산업체/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장 중심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이 산업체/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장 중심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의 개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등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 둔 발달장애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후, 직업담당교사와 함께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출근하여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의 성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등의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 도입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취업률이 70%까지 향상되었으며, 직장을 유지하는 학생의 비율 역시 8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AAIDD, 2014).

▶ 프로젝트 서치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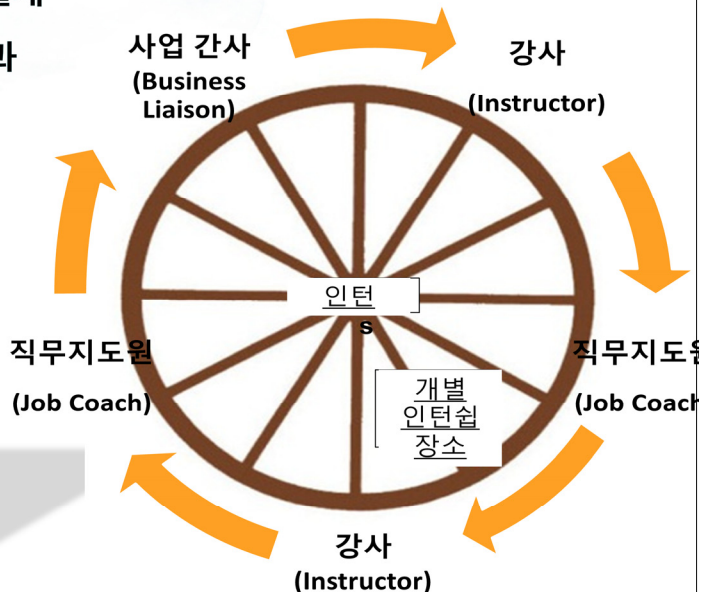
- 경쟁고용을 목표로 함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 해당 업체에 채용도 가능
- 완전한 작업장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대한 경험 제공 및 실질적인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경력 탐색 및 작업 기술 획득을 위한 인턴십 과정 제공
-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회 제공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프로젝트 서치 사업 실제

▶ 참가 학생의 하루 일과

- 8:50 - 인턴을 하는 사업체에 도착
- 9:00 - 교육 계획에 따라 수업
- 10:00 - 인턴십: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 기술 학습
- 12:30 - 점심식사
- 13:30 - 인턴십 (계속)
- 15:00 - 교실에 돌아와 하루 점검, 일지 작성함
- 15:30 - 일과를 마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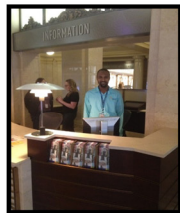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프로젝트 서치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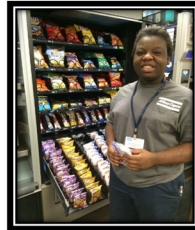
약국(약품 정리, 위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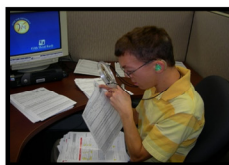
안내원



자판기



자료 기입



창고정리



타일 놓기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3.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1)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도입 검토

- 발달장애아동이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자립 시 소요될 수 있는 교육, 훈련, 취업, 창업 및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발달장애성인이 가정 또는 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실시 필요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고(자폐성장애인 503만원, 지적장애인 141만원, 시각장애인 84만원), 다른 장애유형보다 고용률이 낮으며(발달장애인의 고용률 15.7%,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 37.6%),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더 낮음 (지적장애인 54만원, 자폐성장애인 38만원, 지적장애인 155만원, 청각장애인 136만원)(조흥식 등, 2012).
 -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보호작업장 등 낮은 수준의 훈련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이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소득 보장 제도를 수립,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기존의 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자산형성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소득 보장 사업 제안

※ 기 시행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 사례(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 「아동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및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운영 중. 이 사업은 대상 아동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대상은 보호 조치 대상 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임.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모든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성인을 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대상이 제한적이고 적립금액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3.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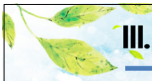
1)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도입 검토

•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 방안

- 발달장애인(또는 보호자)이 매월 4만원(20%)을 적립하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매칭펀드로 각각 8만원(각 40% 부담)을 부담하여 매월 총 20만원을 적립하고, 20년간 적립 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시기에 맞추어 해당 적립금액을 일시 지급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
- 5세 발달장애아동이 20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납입했을 때, 25세부터 45세까지 매월 43만 8천원을 2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음 (복리 40%로 계산할 경우)
- 20세 이상의 발달장애성인 역시 본인이 원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립금의 일정 비율 지원 필요
- 예를 들어, 경기도 등록 발달장애인 약 4만 2천명(15년 12월말 기준)이 매월 20만원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008억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와 각 시군은 각 502억여원(1개 시군당 16억여원)의 예산 확보 필요

※ 해외 사례 - 일본의 심신장애자부양보험 제도

- 중증장애자녀를 둔 보호자가 중증장애자녀를 대상으로 민간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험에 가입한 장애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 제도 운영(1970년도부터 시행, 2007년 동경도에서 시행함으로써 일본 전역에서 시행)
- *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연금 지급 발생 요건): 가입자(부모) 사망시, 가입자(부모)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자(부모)가 노령 65세 이상의 나이에 도달한 경우 지급
- 보험 가입 금액 및 수령 금액: 보호자는 월 1구좌(2만엔, 약 20만원) 또는 2구좌(4만엔, 약 40만원)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연금 수령액은 가입한 금액과 동일, 보호자가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는 보호자의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부족한 금액은 지자체에서 보조
-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에서는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부모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보험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음.
- *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 한 가구에 장애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기준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세대(저소득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주
- 보험 사업 운영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에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



Ⅲ.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3.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2) 발달장애인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특별 수당 제도 도입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소득 보장 지원 사업 실시

※ 해외 사례 - 일본 도쿄도 중증 심신 장애자 수당

- 「도쿄 중증 심신 장애자 수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6만엔 지급
- 수급자격
 1. 심한 지적장애와 함께 일상생활에 상시 복잡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현저한 정신 증상을 갖는 경우
 - 심한 지적장애는 사람의 수첩(도쿄도의 요육수첩) 1급, 2급
 - 현저한 정신 증상
 - 두드러진 문제 행동 · 난치성 간질
 2. 심한 지적장애와 함께 신체의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호 생략)
 3. 중증의 지적 부자유자이며,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손실되어 있고, 앉아서도 어려울 정도 이상의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

※ 해외 사례 - 영국

일을 하기 어려운 16~65세의 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소득보장 지원금액 (주거수당 및 돌봄수당 제외)

- 1) 개인 독립 수당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 일상생활수당 주당 £82.30
 - 이동수당 주당 £57.45
- 2) 고용 및 지원 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 서포트 그룹 주당 £109.30
- 3) 총 합계 = 주당 £249.05, 월£1,079.2(약1,758천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I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 II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III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
- IV 제언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지역 차원 정책 과제

- 1.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 기초형(사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2.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선배자·후배형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생활 지원 모델 개발
 - 지원하우스, 클러스터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사업 시범 실시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기성·지역사회거주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 공공인대주택 물량 확보(1% 이상) 지역사회 거주에 따른 정착금(1회) 및 주거생활비(최대 7천) 지원
- 3. 소득 보장 및 고용 확대**
 - 발달장애인 자선형성 지원 사업 실시
 - 발달장애인의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수당 제도 도입
 - 현장 중심 직업 훈련 사업 운영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업전환센터 설치
 - 현장 중심 직업 교육 지원 확대
- 4. 신규 사업 시범 운영**
 - 행동발달증진센터, 의사소통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설치, 운영
- 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비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을 위한 피플퍼스트00지원센터 설치, 운영
- 6.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확대**
 - 시군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자 및 동료 상담가 양성 지원 체계 구축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재활이 아닌 가활 중심의 정책 추진

- 장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가활 중심 정책 제안: 입기쉬운자료개발센터, 정보문화센터, 가활복지센터 운영 등

* 가활 중심의 복지정책: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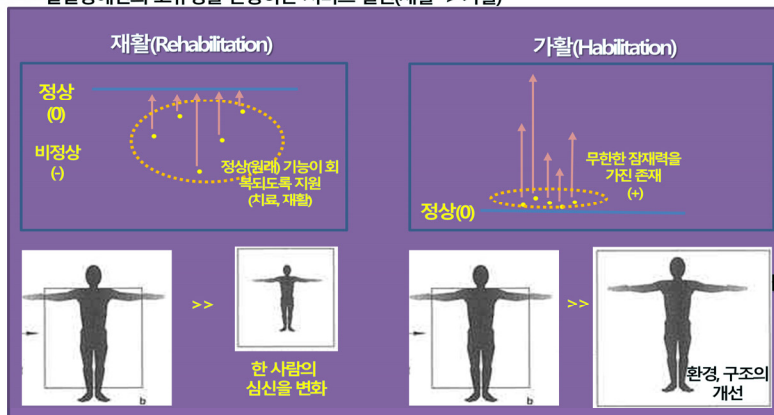
재활(Rehabilitation)	가활(Habil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으로의) 회복(복구) 지향 장애 그 자체 고려 (개인 치료, 재활에 집중) 준거에 따른 평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원 선(先) 지원(치료) 후(後) 배치 정규분포 가정 공급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 지향 역동적 맥락(환경) 기반, 사회환경 고려 (주변 환경의 장애(장벽) 고려) 준거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음 선(先) 배치 후(後) 지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음(이상분포) 개인 중심
<p>→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재활(re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 추진 필요. 기존 복지관, 치료실 등 재활 중심 서비스를 가활 중심 서비스로 전환 요구</p>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재활이 아닌 가활 중심의 정책 추진

* 발달장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서비스 실현(재활 -> 가활)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재활이 아닌 가할 중심의 정책 추진

* 가할서비스의 예

- 장애인 개인의 치료(훈련)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애인 주변의 사회적 장벽을 제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
 - 장애인 보다는 장애인 가족, 장애인 지원 인력,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과 조직(집단)의 변화를 도모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둠
 - 대표적인 서비스: 장애인 가족과 지원 인력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술 훈련 제공 사업, 보조인력,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 연수 사업,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양육 지식 및 기술 지원 사업, 지역사회 · 학교 · 가정 등과 연계한 기술 자문 서비스 등
-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특히 사회 참여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둠
 - 대표적인 서비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조절인(지원인력) 배치 서비스,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작 · 보급 서비스,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 제공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 장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현 상태에서 그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
 - 장애인을 정상으로 교정, 치료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의 강점을 파악하여 강점을 강화하고, 강점에 기반하여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 대표적인 서비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정 중심 사정 서비스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등
-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자기선택을 하기 어렵더라도 가능한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 대표적인 서비스: 자기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 · 가정 · 직장 · 지역사회 등에서의 자기결정 기술 향상 지원 컨설팅 서비스,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실시 및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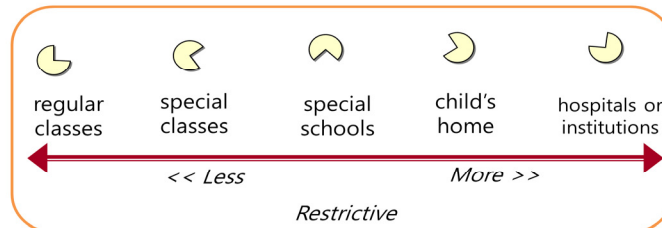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최소제한환경 원리 실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소 제한 환경 원리에 따른 지원 체계

- * 미국 장애인교육향상법(IDEA)에서는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을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최대한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환경이라고 규정
 - **최소 제한 환경 원칙에 따라 장애아동의 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반학교 일반학급 → 일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순회교육(가정) → 병원, 시설 교육으로 정하고 있음**



Hevard(2008). LRE Module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소 제한 환경 원리에 따른 지원 체계

* 최소 제한 환경(LRB)원리를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음 : 주거, 고용, 활동(보호) 서비스 적용

제한정도	최소 제한 >		
	주거 서비스	고용 서비스	일상활동 서비스
<< 최대 제한	* 거주장소만 제공(주택임대)	* 일반고용 (원전경쟁 고용)	* 주간활동: 일반 그룹
	* 거주장소+관리서비스 (건물수선, 공과금 관리 등)만 제공(공동주택)	* 지원 고용 (선배치 후지원)	*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그룹
	* 거주장소+관리+미약한 개별지원(세탁출)	* 지원 고용 (선호권 후배치) - 훈련 기간 조정 -	* 주간보호 + 주간활동 - 주간활동: 여가, 놀이, 문화, 체육, 예술 등
	* 거주장소+관리+식사+미약한 개별지원	* 직업준비 훈련 - 기존 보호작업장	* 주간보호 (간호와 보호) - 병원, 요양기관
	* 거주장소+관리+식사+개별지원(그룹홈, 케어홈)		
	* 거주장소+관리+식사+개별지원+간호지원(요양홈)		

※ 기존의 보호작업장개념을 직업준비훈련으로 전환, 기존의 주간 보호(Care)를 주간 활동(Activity) 개념으로 전환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지역사회 통합 중심의 정책 추진

- 분리가 아닌 최소 제한된 환경에서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정책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선도: 현장중심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주택 중심 주거 지원 사업, 주간활동 지원 사업 등

서울케어플러스센터(서울시지원), 퍼스트잡사업(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을 통해 일반 사업체에서 취업할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지원(직무지도원 배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주가 요구하는 직무와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직무가 일치될 때까지 지원
-> 서울케어플러스센터 지난 6개월간 약 1백여명 발달장애인 일반사업체 취업 성공



미국 프로젝트 서치



수술실 청소(개발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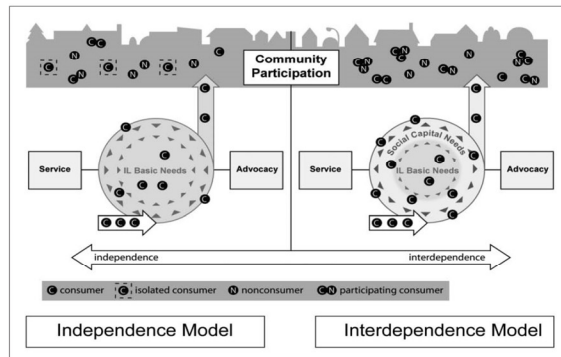
'케어플러스센터' 개소(17. 4)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지역사회에서 상호의존하는 삶 구현

* 고립된 독립생활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의존하는 자립생활 실현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개인 맞춤형 서비스

- 맞춤형고용(customized employment), 맞춤형주거(customized housing) 등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일자리, 주거, 주간활동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의 특성과 요구, 개인의 강점과 선호 활동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이를 위해 개인의 강점과 선호 활동을 표현하고, 이를 촉진(장려)하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목록을 개발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정기적인 질 관리 체계 구축
- 서비스 평가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 서비스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 등

IV. 제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과제

미래 발달장애 정책

평등, 존중, 존엄 등이 고려된 가치있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 ❖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택권 보장, 유연성 제고, 정보의 평등,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하면서도 가치 있는 서비스를 보장받는 것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2006) 등을 지향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평등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 ❖ 장애를 갖게 된 일부 사람들이 장애라는 소수 집단 이외에 또 다른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장벽과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사실도 함께 인지하여야 함. 이제는 여러 평등 의무가 공공 서비스 집행에 적용되고 있음.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이런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수많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각종 서비스 등도 이런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함.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발달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장애의 사회적 모델 실천
 - ❖ '독립적 생활'이라는 개념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핵심. 이 개념은 독립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자신이 하거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은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이 개념은 직접 지급 및 개인별 예산의 개발의 근거가 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검토 (아동보육시설 거주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 들어가기

-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키워나가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부산지역의 발달장애인 숫자는 2019년 12월 현재, 13,779명(남성:8,824명, 여성:4,955)으로서, 부산시 전체 등록장애인 175,378명의 7.85% 수준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2,618,918명) 중 발달장애인(241,614)은 평균 9.2%로서, 전국 대비 좀 더 낮은 장애인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장애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며, 욕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언급한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함.
- 특히,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직업 훈련/고용 지원만으로는 ‘자립생활’의 토대가 마련되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에 이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방식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부산지역에서의 ‘무연고’¹⁾ 발달장애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을 해 놓은 기초자료가 없기에 지원 방안을 내놓는데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제 나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저런 학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지라,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는 일은,

1) ‘무연고’라고 할 때, 대체로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지칭하지만, 이 글에서는 가족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발달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알콜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을 포함한 경우)인 경우와 등본상으로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바라보고 있음.

의미가 없진 않을듯함.

-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그나마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범주 중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발달장애아동’ 부분이기예,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실제로 겪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함.

2. 부산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 부산시 연도별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비율 및 증가 추이

(단위 : 명, %)

년도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증가	비율	부산장애인인구
2009	8,592	947	9,539	-	5.65	168,493
2010	8,926	1,018	9,944	405	5.75	172,765
2011	9,217	1,082	10,299	355	5.99	171,729
2012	9,553	1,146	10,699	400	6.26	170,743
2013	9,876	1,251	11,127	428	6.55	169,750
2014	10,174	1,329	11,503	376	6.82	168,663
2015	10,511	1,417	11,928	425	7.09	168,084
2016	10,812	1,515	12,336	408	7.30	168,950
2017	11,155	1,632	12,787	451	7.46	171,384
2018	11,528	1,771	13,299	512	7.65	173,820
2019	11,853	1,926	13,779	480	7.86	175,378

※ 주: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

※ 출처: 각 연도별 통계청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 지난 10년 동안 부산시 발달장애인 인구는 매년 평균 420여명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부산장애인인구 대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매년 250명 전후로 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70~80여명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150여명까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음) 2009년과 비교해볼 때, 늘어난 발달장애인 인구가 4,240명인데, 부산시에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늘어난 장애인 인구 숫자가 겨우 6,885명임을 고려한다면, 부산시에서 늘어난 장애인 인구 중, 무려 62%에 차지하는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 폭과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문제를 끊임 없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 특히, 이 수치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매년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인구가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로 등록 하기보다는, 유아동기를 비롯하여 학령기 성장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나타나거나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달장애등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다루는 ‘무연고 발달장애아동’이라는 주제와 연동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적지 않음.

▣ 부산시 연령별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령대별	합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명	%	명	%	명	%
합 계	13,779	100	11,853	100	1,926	100
0 ~ 9세	1,146	8.3	662	5.6	484	25.1
10 ~ 19세	2,864	20.8	2,121	17.9	743	38.6
20 ~ 29세	3,470	25.3	2,879	24.3	591	30.7
30 ~ 39세	2,297	16.7	2,202	18.6	95	5.0
40 ~ 49세	1,915	13.9	1,903	16.1	12	0.6
50 ~ 59세	1,258	9.2	1,257	10.6	1	0.0
60 ~ 69세	646	4.7	646	5.5	0	
70세 이상	183	0.1	183	0.2	0	

※ 출처: 통계청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 표에서 드러나듯이, 20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언급했

듯이 이러한 발달장애인 중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 자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파악된 바가 없음.

- 학령기를 제외한, 자립훈련을 필요로 하는 20대의 발달장애인의 숫자도 무려 3,470여명에 이르며, 어떤 식으로든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센터, 근로작업장 등에 다니면서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30대~50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4,200여명임을 고려한다면, 부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은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파악 가능한 무연고 발달장애아동 중심으로 이들의 현황과 마주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함.

3. 부산지역 아동보육시설 거주 및 퇴소 무연고 발달장애인 현황과 문제

- 부산지역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은 전체보호 아동 1,102명 중 56명(5.08%)이며, 매년 평균적으로 4~5명의 장애아동이 지역 사회로 자립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자료 참조. 2018.07)
- 장애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자립해야 하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와 자립 이후 연 2회 정도의 시설 담당자와 전화 상담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으로 인해, 학대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피해장애인으로서 사후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 실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 사건들 중, 아동보육시설에서 퇴소한 발달(지적)장애아동이 사건에 연루되어 (신체적, 경제적) 학대피해를 받은 사건이 5건 정도 있었으며, 언론 등을 통해 각종 범죄·폭행²⁾에 연루되어 드러나기도 했음.

-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산시 보호아동 중 장애판정 아동의 장애등록 현황

지적장애			시각장애 5급	뇌병변 장애6급	지체장애 3급	중복장애	합계
1급	2급	3급					
1명	9명	40명	1명	1명	1명	3명(지적/청각, 지적/지체, 지적/뇌병변)	56명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자료(2018.07 기준)

- 아동양육시설 21개소(1,101명)중 15개소(71.4%)에 총 56명의 아동이 장애 판정을 받고 비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 중 지적장애가 50명(89.3%)으로 대다수였으며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도 3명(5.4%)이 있어 장애 판정 아동 중 대부분 발달장애인이었음.

■ 보호아동 중 장애판정 아동의 연령대별 현황

미취학	초등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 재학	20세 이상	합계
2명	20명	8명	17명	9명	56명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자료(2018.07 기준)

- 보호아동 중, 장애판정 아동의 연령대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20명(35.71%), 고등학교 재학이 17명(30.35%), 20세 이상이 9명(16.07%) 순이었음.³⁾

2) “돈 뺏기고 감금, 폭행당한 20대 지적장애인(국제신문, 2018.05.11.)”, “도둑질 싫다하면 ‘다 죽는다’ 협박,.. 지옥같은 2년 6개월(국제신문, 2018.05.16.)” 해당사례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의 삶이 각종 범죄·폭행에 연루되어 인권침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00명당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시설 내 보호아동과 보호종결 아동 모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어려움. 그런 점에서 향후 자립지원 대상인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퇴소시켜야 함. 이에 향후 3년 이내 자립대상⁴⁾(고등학교 재학 이상)은 인원수는 총 26명(46.42%)으로 추정됨.

■ 부산시 보호종결 아동(퇴소자) 중 장애판정 아동 현황: 최근 5년간

지적장애			기타장애	합계
1급	2급	3급	시각장애6급	
2명	6명	18명	1명	27명

- 보호종결 아동 중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은 27명으로서 이들 중 지적장애가 있는 퇴소아동이 26명(96.3%)으로 대부분임.

■ 퇴소자 중, 장애판정 아동의 現 거주형태

미확인	보호자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	쉼터	합계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8명	7명	8명	2명	1명	1명	27명

- 보호종결 이후 거주형태는 장애인거주시설(그룹홈 포함)로 입소한 경우가 10명(38.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 7명(26.9%), 자립한 아동은 1명(3.7%)이었으며, 미확인도 8명(29.6%)으로 드러났음.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보호센터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옹호기관에서 접수된 사건

4)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퇴소시켜야 함. 그러나,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교육·훈련 중이거나, 계속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따라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이 있음.

중, (거주지) 미확인자 한 명이 아동보호시설 비장애인 동료들로부터 금전 착취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있기도 했음. 이와 관련하여, 체험홈으로 연계했으나 본인이 거부하였고, 현재는 고시원에서 후견인이나 활동지원사 신청도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음.

■ 퇴소자 중, 장애판정 아동/성인의 연령대

25세 미만(17명)					25세 이상(10명)			합계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명	1명	4명	6명	4명	5명	4명	1명	27명

-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결된 아동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초 · 중반대로로서 언급한 보호기관에서의 보호가 만료되거나 혹은, 보호종결 아동의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즉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끝난 최근 5년 이후로 보호종결이 끝난 무연고 발달장애성인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퇴소자 중, 장애판정 아동/성인의 현재 거주 형태

미확인	보호자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	쉼터	합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명	7명	8명	2명	1명	1명	27명

- 보호종결 이후 거주형태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입소한 경우가 10명(38.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 7명(26.9%), 자립한 아동은 1명(3.7%)이었으며, 미확인도 8명(29.6%)으로 나타남.
- 미확인 거주 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도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발달장애청소년이 아동보호시설의 비장애인 동기로부터 경제적 착취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옹호기관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음. 당사자에게 주거지원 및 근로 연계, 후견인 지정 등을 모색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재는 고시원에서 수급비로 혼자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음.

- 한편,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신원이 인계되어 보호자가 보호하는 경우에도 부모에 의한 경제적 착취 사건이 접수된 경우⁵⁾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도 학대 사건(경제적 착취 사건)⁶⁾이 발생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부모 보호자나 시설 원장이 있다고 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별개 문제임. 또한, 2019년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장애인거주시설로 옮긴 이후, 다시 공동생활 가정으로 거주지를 바꾼, 무연고 발달(지적)장애여성 (20살)이 정신병원으로 강제적으로 입원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가 있음. 내용인 즉,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선생님 말을 듣지 않자,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연락하여 그녀를 강제로 입원시킨 사건이었음.⁷⁾

-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보호시설의 보호 종료된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로서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근로 연계나 복지 서비스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5) 부모에 의해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한 후, 나이가 들어 퇴소한 지적장애 3급 김00(여, 28세)은 퇴소 이후 약 8년 간 한 직장에서 일하여 1억원 정도의 돈을 모았으나, 전부 친아버지와 계모가 관리 하면서 용돈을 주며 생활하였음. 김00씨가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12만원으로 공동 화장실을 쓰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그들 가족 사정을 하는 누군가가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고하였고, 발달지원센터와 우리기관이 함께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6)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었음.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옹호기관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시설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강제입원이 의심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음.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공동생활가정 원장 중 한 명이 무연고 성인발달장애인 3명을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이들 수급비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횡령한 사건이 발견하여, 옹호기관 측으로부터 고발당하여 구속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7)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옹호기관에서는 공동생활홈의 원장과 장애여성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기 위해 그룹홈이 있던 곳까지 찾아왔던 병원 원무부장을 감금죄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지난 10월에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목임)

- 따라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안 (욕구조사-자립준비훈련-전환교육-지역사회 자립)이 필요하며, 이것은 장애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연구에 따르면, 진학 취업 등에 따른 적응문제(56.7%), 주거 문제(36.5%), 자립정착금 관리 문제(32.6%)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아동 보호시설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심리치료(74.8%)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반면, 퇴소 이후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은 8.6%로 매우 낮은 상황임. (아동보호시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 따라서 무연고 발달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욕구와 현재 그들의 역량, 필요한 자립 훈련/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종료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 기관을 따로 선정하여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함

4. 국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황과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1. 활동지원제도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시간 (양)의 문제로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인 인정조사표는 신체 장애인 평가에 보다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음. 특히,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종료된 무연고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시설에서부터 연계 되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결과적으로 이런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들도 있음.

-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 영역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특히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 지원사가 후견인⁸⁾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으로 생활 전반적으로 모든 활동이 요구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상당수가 지체 및 뇌병변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기에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제기됨.

4-2. 주거지원

-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주거제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현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주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모두에 부재함. 그런데 현재 주거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주거형태 욕구 반영이 안됨.
- 현재 국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은 ‘체험홈’, ‘자립주택’ 등이 있지만, 성인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체험홈 시설

8)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들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장애인 인권의 차원에서 실제 많은 한계가 있긴 하나, 현실에서는 ‘그나마’ 후견인 제도로 인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물론 후견인 권한이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도 있으며 후견인의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등이 매우 적음. 특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등 주 대상은 거주시설의 퇴소장애인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은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런 경우,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의 마련 없이 지역사회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음.

- 실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아동 27명 중 현재 거처가 미확인된 무연고 발달장애성인이 무려 8명(3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말해주고 있음. 따라서 학대피해장애인 중 다수가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LH 등에서 보증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4-3. 고용지원

-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은 공통적으로 낮은 생산성, 부족한 경영마인드, 열악한 기술현황, 저임금, 단순임가공형태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그나마 연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찾아가든지 혹은 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전공과나 혹은 다른 기업체와의 연계를 모색하기도 하나,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학교를 졸업하기에 전공과 진학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취업도 이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주체(보호자)가 없기에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됨.
- 또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일자리라든지 박람회 등 이러한 취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어, 결국 수급비로만 생활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기력증에 걸린 모습들도 발견되기도 했음.
- 다행히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취업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무연고 발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없진 않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직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라거나 한편으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장애인 동료로부터 경제적 착취 등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옹호기관에서 신고된 사례가 있음.

5.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 방안 결론

- 무연고 발달장애인 중, 지금까지 다루었던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에서 자립생활 체험이 가능한 자립형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체험홈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단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된 선배들과 만남을 주선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제공하며, 본인들의 욕구를 점검하고, 무연고발달장애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기 제공
- 무연고발달장애아동의 보호시설의 퇴소와 보호종결 이후, LH주택공사로부터 주택 확보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지원.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무연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기관을 지역사회 내에서 설정.
-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중 탈시설장애인 및 자립하고자 하는 재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서비스> 제공이 있음.

-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서비스 추진방법⁹⁾
 - 지역 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개별 주거로 전환하기 용이한 건물을 내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주택확보
 - 탈시설 장애인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중 낮은 수준의 가사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
 -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만들어 일반 호텔과 유사하게 소규모의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지원
 - 식사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및 여가프로그램 연계서비스 제공
 - 그 외, 발달장애인이 직접 주거를 마련하는 경우 주택코치를 통한 지원

○ 이처럼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공간에서 자립 후, 정착을 위한 지원과정, 예컨대, 집안 관리, 건강관리, 안전 및 긴급상황 대처지원 등의 <주거관련서비스>와 직업훈련, 여가/문화활동지원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코치 양성 및 관리 등이 필요함.

○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의 기본 방향은, 이와 같이 그들을 ‘보호’ 하는 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하되, 근본적으로는 무연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요컨대,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임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일 수 있는, 주거지원, 돌봄지원, 고용지원, 후견인지원제도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기관/센터가 필요함.

9) 부산복지개발원, 2017, 부산시 장애인정책 5개년 중 참조

▣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17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외, 2013
- 방치된 보호시설 장애인 상,중,하, 국제신문, 2018, 5
- 부산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부산복지개발원, 2017
- 부산지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자립전환지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아동보호시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과 방안,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울산광역시, 2020
-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3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 3]

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디자인연구실장)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의미한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연령이나 개별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욕구와 필요가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생애단계별 접근이 중요하다. 영·유아 시기는 장애 조기발견과 개입, 학령기는 의료재활과 특수교육, 성인기는 직업 재활 및 평생교육과 소득보장, 노년기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돌봄 및 주거 확보 등 생애단계별로 다양한 욕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변용찬 외, 2006; 김용득 외, 2000).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애단계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의 지원정책 중심으로 실행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지원정책도 주로 영·유아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최선실·박승희, 2011).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에 따른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추진과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가족과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애단계별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2017년 12월 기준 발달장애인이 10,598명(전체 대구시민 대비 8.8%)으로 7개 특별광역시에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욕구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연구는 대구시 현황과 요구에 맞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1.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 여건 분석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 글로벌 패러다임과 법률과 행정체계, 정책의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 기간 간의 협력을 통한 장애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실제적인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재활(치료)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히 치료서비스를 통해 장애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와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가 과도한 치료 쇼핑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제공이 아닌 서비스 입장에서 생애단계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기관 등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서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모(母) 노년기에는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특히 모의 편증 현상은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돌봄자의 부담감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가족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주 돌봄자의 부재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인식, 상담 등이 필요하다.

넷째, 발달장애인이 생애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의 확대 및 건강지원 바우처의 도입이 시급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할 수 있다. 그동안 영·유아기부터 의료, 교육, 복지, 고용 등이 분절적으로 각자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로 전환

될 때 서비스 중단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된 체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시설 등에서 인권적 관점이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 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기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장애 진단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 및 가족지원 확대와 주 돌봄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단계별 복지시설 및 인프라, 인력의 확대와 지원서비스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접근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1) 지원 제도

대구광역시 등록장애인 수는 2018년 12월 기준 123,070명이며, 대구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8.9%(10,985명)로 7대 특별·광역시에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다. 성별은 지적 장애인(5,951명, 60.5%), 자폐성 장애인(973명, 84.2%) 모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는 20대가 2,955명(26.9%)으로 가장 많다. 생애단계별로 살펴보면 성인기(만 18~49세) 6,985명(63.6%), 학령기(만 6~17세) 2,075명(18.9%), 노년기(만 50세~) 1,751명(15.9%), 영유아기(만 0~5세) 174명(1.6%) 순으로 많다. 또한, 거주 지역을 구·군별로 살펴본 결과 달서구 2,403명(21.9%), 동구 1,976명(18.0%), 북구 1,886명(17.2%), 수성구 1,605명(14.6%), 달성군 1,116명(10.2%), 서구 934명(8.5%), 남구 774명(7.0%), 중구 291명(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을 살펴보면, 크게 영·유아(만 0~5세 이하), 학령기(만 6~17세), 성인기(만 18~49세), 공통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 대상 기관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개소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4개소(대구 전체 어린이집 대비 2.21%)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대구시 거주 장애 영·유아는 총 873명이다. 유치원의 경우 전체 344개의 유치원 중 23개 유치원(대구 전체 유치원 대비 6.69%)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 거주시설은 1개소로 수성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80명의 장애 영유아가 생활중이다.

다음으로 학령기 대상 기관으로 대구시는 9개교의 특수학교, 342개교의 일반 학교에서 454개 특수학급 그리고 460개의 전일제 통합학급, 5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중이다. 대구시 내 장애인 특수학교는 총 9개교로,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3개교, 사립 6개교, 장애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4개교, 지체장애 2개교, 시각·청각·정사장애 각 1개교이다. 또한, 대구시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총 5개소로, 달서구에 2개소, 중구·북구·달성군에 각 1개소가 있다.

성인기 대상 기관으로는 근로사업장이 달성군 2개소, 동구·수성구·달서구 각 1개소씩, 보호작업장은 달서구 9개소, 북구 7개소, 동구·남구 각 6개소, 중구 4개소, 수성구 3개소, 서구·달성군 각 1개소씩 있다.

공통 시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체 장애인 시설 2개소, 지적장애인 시설 7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0개소가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총 63개소로 장애인복지관 6개소, 주간보호시설 48개소, 장애인체육관 2개소, 수어통역센터 5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가 운영 중이다.

2) 생활실태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 지원 측면에서 노년기(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확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발달장애인의 교통 편의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시행 및 가정 내 학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 발달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 특히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발달장애인의 사망 연령이 일반 국민보다 매우 낮음을 반영한 관련 정책의 개정, 발달장애인의 운동 및 식이요법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였다.

교육(특수교육) 부분에선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 확대, 발달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을 자세히 검토하고 개선,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시행,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마련, 취약한 주거환경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금·현물의 주거비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경제활동 분야에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 발달장애인의 근무 기간을 늘리고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지출 부분에서는 경제상태 인식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취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 연령대별 장애로 인한 지출이 많은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였다.

체육·문화 활동 측면에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발달장애인이 더욱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만족스러운 문화 및 여가활동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위해 동행서비스, 동호회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실태 측면에선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경제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 이미 수급자격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3.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서울, 광주, 경북, 뉴질랜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방안 사례 분석으로 부터 얻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 및 체계가 선행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권리보장 도구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 특성에 따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생애단계적 관점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의료재활 및 특수교육,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접근됐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영유아기는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학령기는 의료재활 및 특수교육, 성인기는 재활 및 평생교육과 소득보장, 노년기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돌봄 및 주거 확보 등 생애단계별로 다양한 욕구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뉴질랜드는 NASC라는 욕구평가 및 서비스 조정체계를 두고 있어 NASC 기관에서 각종 장애 지원서비스 중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우리나라처럼 서비스 조정체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판정 및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만큼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뉴질랜드 정부가 운영 중인 New Model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더 많은 선택과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거나, 강화된 개인별 기금 방식을 도입하여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생활 비용,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등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지역 중재, 지역사회 생활 내 선택 사업을 통해 코디네이터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인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ew Model은 당사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별 지원이 더 잘 실현되도록 중재-조정 인력을 투입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이다. 따라서 서비스에 있어 당사자 중심성과 결정권을 더욱 크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논의 중인 개인 예산제 등과 함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뉴질랜드의 장애인들이 격리, 분리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풍부한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장애와 관련된 수당 제도를 확인하였을 때, 장애와 관련된 소득보장 비용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환경구축 방안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은 대구시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비전을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환경 실현’으로 설정하고, ① 자립생활 지원, ② 기회와 권리보장, ③ 사회통합 및 참여기반 구축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책영역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발달장애자녀의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 체계 구축,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자립계획 수립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기회와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 및 직업훈련 시행,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및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등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비전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환경 실현

정책 목표	자립생활 지원	기회와 권리 보장	사회통합 및 참여기반구축
중점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2. 발달장애자녀의 독립생활 준비 위한 자산형성 지원 3.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화 5.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자립 계획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2.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3.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지원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 직업훈련 실시 5. 발달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6.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운영 2.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3. 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4.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운영 5. 발달장애인 권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그림 1] 권익보장 환경구축 방안의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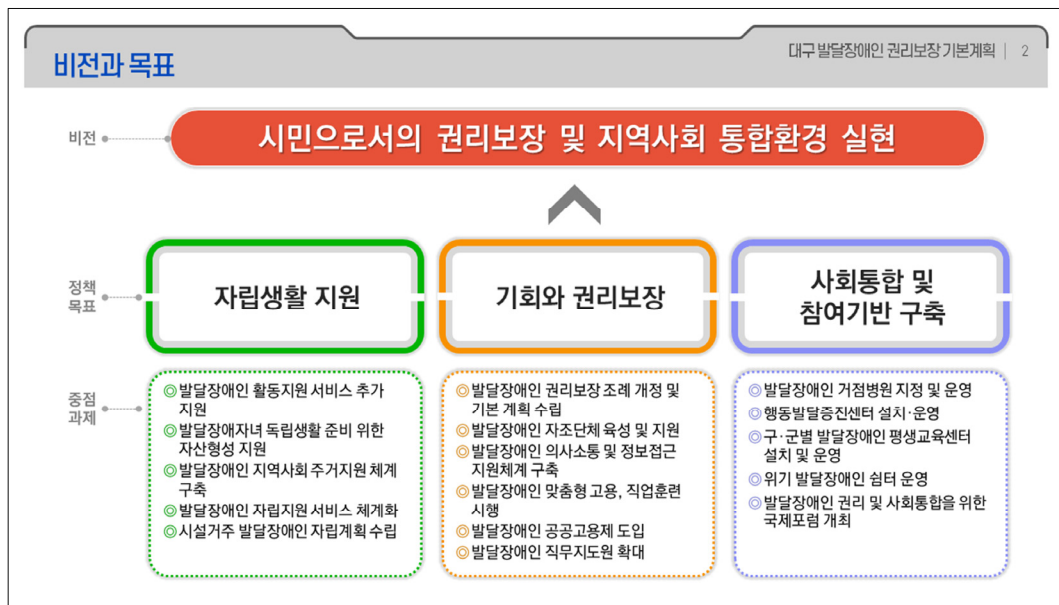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첫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를 성인 우선에서 아동 순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발달장애 자녀의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확보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칭)발달장애인 자립주택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구·군으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지원조례 개정으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넷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한다. 사업의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고, 거점 운영기관의 확대를 통해 지원체계를 개편 및 확대한다. 다섯째, 더욱 원활한 탈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자립계획을 수립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생활 정보제공 교육을 의무화하며, 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간의 연계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연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 및 탈시설 지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발달장애인의 기회와 권리보장을 위해 첫째, 대구시 발달장애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대구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인 ‘대구피플퍼스트(People First)’를 육성·지원하고, 대구시 NGO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모임을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대구시와 각 구·군 등의 장애 관련 정책을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하고 보급한다.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제작과 보급,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가칭) 대구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넷째,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가칭) 대구발달장애인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연차별로 구·군별로 확대한다. 또한, (가칭) 대구발달장애인커리어플러스센터는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지원,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직업훈련을 시행한다. (가칭) 대구발달장애인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연차별로 구·군별로 확대하는데, (가칭) 대구발달장애인커리어플러스센터는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지원,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발달장애인 공공고용제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비영리단체 내에 공공일자리 선정자를 배치하고, 발달장애인 공공일 자리를 연계할 위한 구·군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일곱째,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을 확대한다. 또한, 일반 고용 확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지원인 양성과 파견 사업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둘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셋째, 대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거점으로 장기적으로 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구·군 내 1곳 이상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지원하며, 일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를 지정·운영하여 쉼터 입소 발달 장애인에게 사후 원활한 전환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쉼터 이외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말과 휴식을 위한 일시적 보호 목적의 발달장애인 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권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교류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영역별 추진과제 : ①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지원체계 구축

성인 발달장애인의 시설화를 방지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폭을 확장

최종증 및 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화

발달장애인자립사업 체계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시설화방지 및 지역사회정착, 고용진환 증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보호를 통한 인간다운 삶 영위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계획 수립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개인별(탈시설)자립지원 계획 수립과 이행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자기결정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보호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

지역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장애인과 지역사회 정착 및 후견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
지역장애인 가족의 부모교육,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의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제도 마련 및 사업 수행,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및 자립생활 위한 자산마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생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개선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 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증진

영역별 추진과제 : ② 기회와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통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시 책무성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 직업훈련 시행 및 공공고용제 도입

발달장애인 취업증진 통한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후견개시 심판비용, 후견인 활동비, 공공후견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 확대
탈시설, 재가 발달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다양한 업체 및 직종 개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 발달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자기옹호 역량 강화로 사회적 여활동 증진, 자존감 향상 및 사회연결망 확장

발달장애인 상시 이용시설 인권 점검

서비스 문화 및 인식개선 사전적 예방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점검 통해 사후적 시스템 보완

발달장애서비스 바우처 사업

성장기 발달장애아동 대한 적절한 재활서비스 제공하여 발달장애아동 사회 적응 및 가족 부담 경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체계구축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확대

직무지도원 고용안정에 따른 직무지도 전문성 강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진입 확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정착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일반고용, 공공고용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언어발달에 도움 필요한 아동 대한 서비스 제공하여 아동 사회 적응 및 가족 부담 경감

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 5

영역별 추진과제 : ③ 사회참여

<p>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운영</p> <p>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지원 체계화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p>	<p>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운영 및 사회복귀 지원</p> <p>인권 침해 피해 발달장애인 임시 보호를 위하여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설치·운영</p>	<p>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콘텐츠 개발</p> <p>발달장애인 지역시민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통한 포용사회 실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직접적인 교류기회 증진을 통한 인식 개선 효과 확대</p>
<p>중증중복장애인 사회참여 지원</p> <p>중증중복장애인 돌봄 지원 및 의미 있는 낮 생활지원 통한 사회참여 확대</p>	<p>도전적 행동 자립 최종중 발달장애인 위한 낮 생활 센터 설치 및 운영</p> <p>최중중발달장애인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가족 부담 경감</p>	<p>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p> <p>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다양한 사회경험 증진 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수행 기여</p>
<p>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사업</p> <p>지적발달장애인 및 가족, 유관단체간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적발달장애인 문화향유, 권익옹호 통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p>	<p>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p> <p>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p>	<p>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p> <p>발달장애인 문제행동 대처 및 행동 발달 증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p>

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 6

영역별 추진과제 : ④ 가족 지원

<p>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p> <p>비장애형제 교육 및 자조단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자녀 지원 최중중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가족 휴식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가족 진학·정보 지원체계 구축</p>	<p>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p> <p>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의미 있는 시간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기여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부담 경감</p>	<p>장애아 가족(발달장애아 가족) 양육지원</p> <p>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자 등 사각지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아 가족의 휴식제공을 통한 재출산</p>
<p>발달장애 아동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p> <p>발달장애 아동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통한 발달 증진 발달장애 아동의 주말,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한 가족 돌봄 경감</p>	<p>지적장애 청소년 음악치료 지원</p> <p>음악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의지 제고 및 직업능력향상 지적장애인의 음악 발표회를 통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p>	<p>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마련</p> <p>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가족 서비스 기능 강화로 현장 중심의 가족지원서비스체계 구축 중복사업은 지양하되, 기존 공공·민간 서비스체계와의 연계·활용 강화 장애인 가족과 센터 종사자, 공무원 역량 강화 중심 지원</p>

실종 예방을 위한 GPS 배회감지기 보급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대응

발달장애인 재난재해 대피 교육 정례화

발달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개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대응

부 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6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

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점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

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대상·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 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 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 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200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 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제13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부터 <388>까지 생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1호, 2020. 6.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는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제공시간 및 방법: 제공요일, 제공시간, 제공인력, 제공방법
3. 복지서비스 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계좌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계좌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좌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을 특정후견 기간을 준용하여 정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보호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좌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를 점검한 결과 계좌 관리가 부적절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의 결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 거점병원 운영계획서 각 1부
3.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에 포함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여부
2.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3.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보호·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직업·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6. 4.>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단기 보호, 문화·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 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 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731호, 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 인 쇄 | 2020년 10월

| 발 행 | 2020년 10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18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770-5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